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3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문정복・김준혁・강선우

박상혁 • 민형배 • 박홍배

박균택 · 김문수 · 김한규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3조, 제48조의2제3항).
- 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구 직급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함(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 다.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제58조).

법률 제 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 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3항"으 로 한다.

제33조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교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①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임용 당시 정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사람
- 2.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한 경우
- 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 나. 제2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 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18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

-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연계퇴직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 ①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직지원금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제5항 및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구직지원금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기간은 12개월의 기간에 공단이 제33조의4제1항의 퇴직을 확인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각각 "구직지원금"으로, "직업안정기관"은 각각 "공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로, "대기기간"은 각각 "구직지원금 신청 후 7일이 경과한 날"로, "이직"은 각각 "퇴직"으로 한다.

- ④ 구직지원금은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간동안 해당 일수만큼 지급한다.
- ⑤ 구직지원금은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업의 기준 및 신고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 전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
- 2.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은 이 법 시행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u>제42</u>	11 <u>제48조</u>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2제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	
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	
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	
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	제33조(급여)
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	
원연금법」제28조에 따른 급	
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	
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	
해보상법」제8조에 따른 급여	
를 <u>지급한다</u> .	- <u>지급하며, 교직원의 퇴직에</u>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지
	급한다.

<신 설>

<신 설>

-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 을 지급한다.
 -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할 것
 -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① 교직원 또는 구직 지원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

년에 도달하였거나, 임용 당시 정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사람

- 2.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 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퇴직한 경우
- 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

 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u>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u> 위하여 퇴직한 경우
 - 나. 제2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지원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18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
-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같은 법 제43조 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연계되지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 급기간) ①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 초일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 직지원금일액에 관하여는 「고 용보험법」제45조제1항・제5항 및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 만, 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신 설>

을 30으로 나는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 립액 현황, 물가상승률과 경기 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 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직지원금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 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4 8조제1항의 수급기간은 12개월 의 기간에 공단이 제33조의4제1 항의 퇴직을 확인하기까지 소요 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 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각각 "구직지원금"으로, "직업안정기 관"은 각각 "공단"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는 각 각"「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 2조"로, "대기기간"은 각각 "구 직지원금 신청 후 7일이 경과한 날"로, "이직"은 각각 "퇴직"으 로 한다.

④ 구직지원금은 제33조의4제2 항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생 략) 제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 호에서 정하는 <u>금액</u> 이하의 급 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 저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 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 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 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 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

	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간동
	안 해당 일수만큼 지급한다.
	⑤ 구직지원금은 수급자격자기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업의 기준 및 신고에 관하여
	는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준
	용한다.
ᅦ	40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괴
	같음)
	②
	금액(제33조의4억
	따른 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지
	급 전액으로 한다)
લો	· 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ㆍ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신 설>

<u><신 설></u>

④ (생략)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 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
- 2.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④ (현행과 같음)
- |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 |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 | 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 | 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 | 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 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 | 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일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모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
후